

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현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6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오현정, 박기재, 권영희,
이정인, 홍성룡, 김정태,
김호평, 강동길, 권순선,
김소영, 이병도, 이승미,
송재혁, 김재형, 신정호,
김제리, 한기영, 이광성,
송정빈, 이동현, 이상훈,
김상훈, 김혜련, 봉양순 의원
(24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, 수도원인자부담금, 광역교통시설부담금, 교통유발부담금, 주택재건축부담금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, 2018년 부담금 실제 수납액은 총 4,048억(일반회계 267억, 특별회계 3,781억)에 이릅니다.
- 부담금 징수 실적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 및 결산 심의에 있어 집행부와의 정보 비대칭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입, 세출에의 감시와 견제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임.
- 따라서 부담금별 운영 실적, 회계별 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담금 운용 규정을 신설함(안 제2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, 「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(제21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부담금운용

제21조(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제출 등) ① 시장은 시장이 부과권자이고, 그 수입이 시 지방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의 부과 및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예산안 제출시 의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부담금의 현황
2. 부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징수 주체의 변경 등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 변경·개선 사항
3. 부담금의 부과 계획 및 징수 전망
4.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계획
5.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에 따른 부담금
운용종합계획서의 제출은 2021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제5장 부담금운용</u> <u>제21조(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제</u> <u>출 등) ① 시장은 시장이 부과권자이</u> <u>고, 그 수입이 시 지방세외수입으로</u> <u>귀속되는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</u> <u>제2조에 따른 부담금(이하 “부담</u> <u>금”이라 한다)의 부과 및 사용 계획</u> <u>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</u> <u>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예산</u> <u>안 제출시 의회에 함께 제출하여야</u> <u>한다.</u> <u>②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</u> <u>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<u>1. 부담금의 현황</u> <u>2. 부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징수 주</u> <u>체의 변경 등 부담금 운용과 관련</u> <u>된 주요 제도 변경·개선 사항</u> <u>3. 부담금의 부과 계획 및 징수 전망</u> <u>4.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계획</u> <u>5.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</u> <u>사항</u>